

상주-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
변경 실시 협약

- 제2차 -

2015년 4월 30일

국토교통부

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



변경실시협약(제2차)

국토교통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.)와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.)는 상주-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(이하 “본 사업”이라 한다.)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 31일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(이하 “실시협약”이라 하며, 이후 2013년 11월 15일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을 포함한다.)을 체결하였던바, 본 사업 진행 중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약정투자금 투입일정의 변경 등 실시협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2015년 4월 30일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정의)

본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 2 조 (운영비용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41조(운영비용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초	변경
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<u>금 5,884억원</u> (법인세 제외)이며,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<별표11>(운영비용)과 같다.	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<u>금 5,882억원</u> (법인세 제외)이며,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<별표11>(운영비용)과 같다.

제 3 조 (사업수익률에 관한 사항)

실시협약 제48조(사업수익률)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초	변경
<p>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.70%(세후 5.12%)로 하고,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. 다만 제42조(법인세법 변경시 처리)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5.70%(세후 5.09%)로 하고,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. 다만 제42조(법인세법 변경시 처리)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제 4 조 (별표의 변경)

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 4, 별표 11, 별표 12, 별표 14는 본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 4, 별표 11, 별표 12, 별표 14로 대체된다.

제 5 조 (실시협약의 효력변경)

실시협약의 규정은 본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본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본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본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본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 간의 권리·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)

본 변경실시협약은 본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본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아래 기재 일자에
본 변경실시협약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4. 30.

대 한 민
국 도 교 통 부 장 관 유 일 호



상 주 영 천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

대 표 이 사 강 태 주

